

#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(안)

|    |     |
|----|-----|
| 의안 |     |
| 번호 | ٢٤٧ |

제안년월일 : '93. 4. 12

제안자 : 산업위원장

## 1. 제안경위

-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시 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협의하고 본 조례 제정 합의.

## 2. 제안이유

- 어려운 제반 여건에 봉착되어 오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가급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조례로 제정코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-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
- 도지사가 매년 구매 계획 수립 시행
-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심의회 구성 (위원장 1인, 위원 10인 이내) 및 기능 명기
-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기

## 忠清北道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條例(案)

第1條 (目的) 이 條例는 公共機關이 需要로 하는 物品 (輕微한 工事用役을 包含한다)을 購買할때에는 中小企業者가 生產하는 物品의 購買를 促進함으로써 中小企業의 活力化 를 圖謀하고 地域經濟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 (定義) ①이 條例에서 "中小企業者" (이하 "中小企業者"라 한다)라 함은 中小企業 振興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道內施設 運營業者를 말한다.

②이 條例에서 公共機關 (이하 "公共機關"이라 한다)이라 함은 忠清北道知事 算하 機關을 말한다.

③이 條例에서 "中小企業製品" (이하 "中小企業製品"이라 한다)이라 함은 第1項의 中小企業者가 生產한 物品을 말한다.

第3條 (購買促進) ①公共機關이 必要로 하는 物品을 購買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한 境遇 가 아니면 道內 中小企業製품을 購買하여야 한다.

第4條 (購買計劃의 作成) ①道知事는 每年 豫算 및 事業計劃을 감안하여 中小企業者가 生產하는 物品의 購買增大를 為하여 購買計劃 (이하 "計劃"이라 한다)을 作成한다.

②道知事는 審議會에서 審議된 計劃을 中小企業製品 購買 增大를 為한 基本 計劃으로 確定 活用한다.

第5條 (中小企業製品 購買促進 審議會 設置) 이 條例에서 規定한 中小企業製品의 購買促進을 為한 計劃等을 審議하기 為하여 中小企業 製品 購買促進 審議會(이하 "審議會"라 한다)를 둔다.

第6條 (審議會의 構成) ①委員長 1人과 委員 10人 以内로 한다.

②委員長은 地域經濟局長으로 하고 委員은 當然職으로 財務局長, 中小企業協同組合忠北道支會長이 되고 其他 中小企業에 關한 學識 및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道知事が委嘱한다.

③委員長은 審議會의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.

第7條 (審議會의 機能) ①審議會는 道知事의 諮問에 應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.

1. 中小企業製品 購買 促進에 關한 事項

2. 購買計劃 및 그 實績에 關한 事項

3. 中小企業者와의 異見 調整에 關한 事項

4. 其他 必要한 事項

第8條 (施行規則) 이 條例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.

#### 부 칙

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